

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

20-8

---

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 
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

---

2020. 6. 25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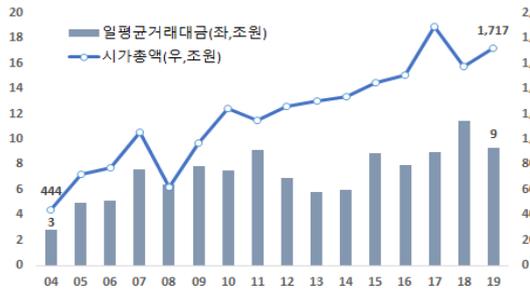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금융세계 현황 및 평가 .....	2
III . 금융세계 개편 방향 .....	8
1. 금융투자소득 도입 .....	9
2.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.....	13
3. 증권거래세 조정 .....	16
4. 보완조치 .....	16
IV . 향후 추진계획 .....	17

# I . 추진배경

## ①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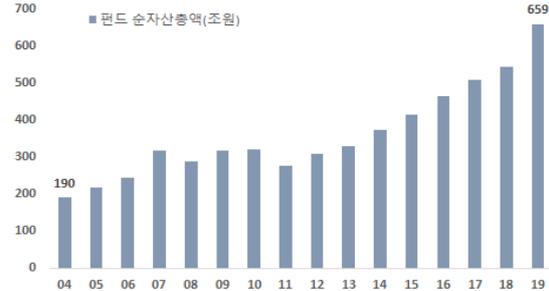
-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

< 주식시장 현황 >



\* 자료 : 한국거래소(코스피·코스닥 합산)

< 펀드 운용 현황 >



\* 자료 : 금융투자협회

- 「자본시장법」 제정 이후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

## ②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필요

- 상장주식·채권·파생상품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축소 및 동일기능의 유사상품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 지속 제기
- 증권거래세 인하,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합리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요구 증대('19.2월 재정특위 권고 등)

## ③ 정책방향의 일관성 및 국회 요구

-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 중

\*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('18.4, 15억원 → '20.4, 10억원 → '21.4, 3억원)

- 「혁신금융 추진방향('19.3월)」, 「경제정책방향('19.12월)」 등을 통해 금융세제 개편 추진 발표
- 여·야 모두 금융세제 개편 관련 법안 다수 제출 (20대 국회)

▶ (조세소위 부대의견)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

## II. 금융세제 현황 및 평가

### 1 현행 금융세제 개요

#### 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과세

##### 가. 개 요

- (과세대상) 법에 열거된 종류의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되,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병행
  -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으면 이자소득,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
    - ▶ 이자·배당소득은 자본의 과실(果實)소득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
  - 펀드·파생결합증권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배당소득 과세
- (원천징수) 납세의무를 간결하게 처리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 운용

##### <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>

구 분	기본세율	예 외
■ 거주자·내국법인	14%	비영업대금이익 25%
■ 비거주자·외국법인	20%	국채·지방채 및 회사채 14%

- (종합과세) 연간 이자·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(14\*~42%)로 종합과세
  - \* 비교과세 : 종합과세 적용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액(14%) 이상 과세하도록 규정
  -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14%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

## 나.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
- (소득구분)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소득 원천별로 과세
- (적격 집합투자기구) 이익의 분배, 수익증권 환매·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

▶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(소득세법 시행령 §26의2)

-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
  -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 투자 제한
  - 하나의 법인에 대해 지분율 10% 초과 투자 제한
  -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
-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·분배(집합투자재산 평가·매매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)
-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

- (비적격 집합투자기구) 소득 원천별로 과세
- (국외 집합투자기구) 요건에 관계없이 분배금은 배당소득 과세 (지분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)

< 펀드 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>

구분		적격 집합투자기구	비적격 집합투자기구(도관과세)
집합투자재산	상장주식 (국내)	배당	배당소득
		양도·평가손익	과세 제외
	국외주식	배당	배당소득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 과세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
		양도·평가손익	
	채권	이자	
		양도·평가손익	
	부동산	임대소득	
		양도·평가손익	

- (과세제외 대상) 상장주식, 장내파생상품의 양도·평가손익은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
  - \* 채권 양도·평가손익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
- 비과세되는 소득의 손실금액은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·배당·임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불가
- (손실공제)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적격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여타 과세소득에서 공제 불가

## 다.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

□ (소득구분) 파생결합증권의 **중도·만기상환, 환매시** 발생하는 이익은 **배당소득 과세**

○ 상장지수증권(ETN) 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(주가지수형 ETN 제외), 주가지수 관련 주식워런트증권(ELW)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

▶ (개념)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

▶ (종류) 기초자산에 따라 구분

- 추가연계증권(ELS) : 특정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변화에 연계

- 기타 파생결합증권(DLS) : 신용 또는 실물자산 가격 등의 변화에 연계

- 상장지수증권(ETN) :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연계(증권사 신용에 기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상장되어 유통)

□ (손실공제)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**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파생결합증권 소득에서 공제 불가**

## ②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

### 가. 주식 양도소득

□ (과세대상) **상장주식(대주주), 장외거래 주식 및 국외주식** 양도소득 등

▶ 대주주 요건(종목별 보유액) : ('20.4) 10억원 → ('21.4 이후) 3억원

▶ 대주주 범위 : 본인 및 특수관계인(배우자·직계존비속) 보유액 합산

○ **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**

□ (세율) 대주주 여부,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~30% 세율로 차등 과세

**<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>**

구 분		장내거래 (상장주식)	장외거래		국외주식
			중소기업	기타	
대주주	과표 3억원 이하	20%	20%		20%
	과표 3억원 초과	25%	25%		
	1년 미만 보유	30%	-		
소액주주		과세 제외	10%	20%	

(기본공제) 국내·국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

**나. 파생상품 양도소득**

(과세대상) 주가지수 관련\* 선물·옵션 등 파생상품(장내·장외),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

\*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과세 제외

(세율) 탄력세율 10% (법정 기본세율 20%)

(기본공제) 국내·국외 파생상품 합산하여 250만원

**다. 채권 양도소득**

(비과세)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

**③ 증권거래세**

(과세대상)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

○ 거주자·외국인·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

(세율) 기본세율 0.45%

○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탄력세율(0.1~0.25%) 적용

**< 증권거래세 세율 >**

구 분	장내거래			장외거래		
	코스피*	코스닥	코넥스	상장주식	비상장주식	K-OTC
세 율	0.25%	0.25%	0.1%	0.45%		0.25%

\* 농어촌특별세 0.15% 포함

## (1) 금융세제 전반

## ① (조세형평성) 열거주의 과세로 과세공백 발생 및 형평성 저해

○ (수평적 불형평) 상장주식(소액주주), 채권,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과세불형평 야기

- 새로운 금융상품(예: 차액결제거래 등)이 계속 출현하여 과세 사각지대 존재

○ (수직적 불형평) 근로·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넓고, 고소득층\* 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조세회피 가능

\* 장외파생상품 투자가능 전문투자자 조건 :

①금융투자 계좌잔고 5천만원 이상, ②연소득 1억원 이상 or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or 회계사·변호사 등 전문직 요건 중 택1

## ② (조세중립성) 투자유형별·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

○ (투자유형)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이 상이

\* 투자신탁(부동산펀드) : 수익증권 환매·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 
투자회사(리츠) :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(장내양도 비과세)

○ (금융상품) 금융상품별 복잡한 과세체계에 따라 투자결정 왜곡

\* 국내 ETF 양도 : 배당소득(주가지수 ETF 비과세)  
해외 ETF 양도 : 양도소득

## ③ (조세합리성)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

○ (불합리한 소득구분) 펀드·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

○ (손실불인정) 배당소득은 손실공제가 불가능하여 원본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

## (2)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

### ① 집합투자기구 소득의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

-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**상장주식 양도손익 등 제외**
  - 집합투자기구 소득이 완전히 과세 되지 않고,
  - 상장주식 양도로 **최종 손실**이 발생해도 **세금 납부(손실과세)**

<펀드 손실과세 사례>

구분	실제 투자손익	과세대상 소득
주식양도손실	△70	0
채권양도이익	20	20
계	△50	20(배당소득 과세)

### ② 집합투자기구간·다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

- 손실 위험이 있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**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**
  - 집합투자기구의 **해외주식 양도차익** 등이 **배당소득으로 구분**되어 **과세체계 불합리 발생**

## (3) 증권거래세

- **증권거래세** 관련하여 ①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**손실과세**, ②주식 양도소득세와의 **이중과세 비판 존재**
- **증권거래세율은 0.25%**로 영국, 프랑스 보다는 낮으나 **홍콩,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**

\* 주요국 증권거래세(%): 영국(0.5), 프랑스(0.3), 싱가포르(0.2), 스위스(0.15), 대만(0.15), 중국(0.1), 홍콩(0.1), 미국·일본·독일은 거래세 없음

### Ⅲ. 금융세제 개편 방향

목표

금융세제의 선진화

기본  
방향

금융자산간  
과세형평성 제고

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 
조세중립성 제고

금융세제의  
합리성 제고

금융투자소득 도입

-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  
\* 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('22년)  
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('23년)
-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
- 2단계 세율구조, 금융회사 원천징수 제도 도입

집합투자기구  
과세체계 합리화

-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
- 집합투자기구 이익 소득구분 재분류
-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손익통산·이월공제 허용

증권거래세 조정

-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병행하여  
세수중립적으로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

# 1

## 금융투자소득 도입 ('22년 시행)

### (1)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

□ **(금융투자소득)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\***(증권, 파생상품)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

\*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,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

○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('22년),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('23년)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

○ 과세기간(1.1.-12.31.)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\*(회수금액 - 취득금액)을 포괄

\* 증권의 결산 분배금·환매·해지·상환(중도·만기상환)·양도(계좌간 이체, 계좌 명의변경,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),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

○ (예외) 원본손실 가능성(투자성)이 없는 소득은 제외

- (이자·배당) 예적금, 저축성 보험,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·배당소득으로 구분

☞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

#### <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>

▶ **금융투자상품**: 이익 추구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,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(투자성)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(자본시장법 §3)

① (증권)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

- (채무증권) 국채, 지방채, 회사채 등
- (지분증권) 주권, 신주인수권, 출자지분 등
- (수익증권)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
- (파생결합증권)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(주가연계증권 등)
- (증권예탁증권)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
- (투자계약증권)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

② (파생상품)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, 원본 초과손실 위험

□ (분류과세) 자본소득(소득의 성격), 결집효과(누적된 소득의 실현), 손실 가능성(투자성)을 고려하여 종합·양도·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

**(2)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**

□ (금융투자소득금액) 과세기간(1.1 ~ 12.31) **별로**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

- ▶ (주식·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) 주식·채권·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(분배소득은 이자·배당으로 과세)
- ▶ (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) 분배소득(이자·배당제외), 증권환매·양도소득
- ▶ (파생결합증권 소득)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(증권환매·양도소득 포함)
- ▶ (파생상품 소득)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

□ (기본공제) ①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/ ②해외주식·비상장주식·채권·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

-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**2,000만원 공제**, 해외주식·비상장주식·채권·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**250만원 공제**

【'22년】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(기본공제 250만원)  
 【'23년】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(기본공제 2,000만원)

□ (이월공제) 과세형평,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

- \*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
- \* 포르투갈 2년, 일본 3년, 스페인 4년, 이탈리아 5년, 미국·영국·독일 등 무제한

**(3) 적용세율 (20/25% 2단계 세율)**

□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·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

\*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 : (과표 3억원 이하) 20%, (3억원 초과) 25%

<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>

과세표준	세율
3억원 이하	<u>20%</u>
3억원 초과	6천만원 + (3억원 초과액 × <u>25%</u> )

▶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: (미) 15~20% (일) 20% (영) 10~20% (독) 25% (프) 30%

#### (4) 과세방법

- ◇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원천징수로 납부 종료(소득금액 3억 이하)
- ◇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확정신고시,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비용 최소화

#### ①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: 금융회사 원천징수

- (원천징수)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
  - (원천징수의무자)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
  - (대상소득)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
  - (원천징수세율) 20%
  - (방법) ①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(매월 중)  
 ②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(매월 말)  
 ③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(다음달 10일)

#### ① (계좌별 원천징수세액 계산)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계산 및 '잠정 원천징수세액(소득금액×20%)'을 제외한 금액 인출 허용

\* 기본공제 신청 계좌의 경우 기본공제(2,000만원/250만원)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

거 래	계좌1(기본공제 적용)		누적 소득금액(a)	잠정 원천징수세액 (a - 기본공제)×20%
	국내 상장주식 A	국내 상장주식 B		
6월	1	△20,000,000	△20,000,000	0
	2		30,000,000	2,000,000
	3	△10,000,000	20,000,000	0
	4		30,000,000	2,000,000

#### ② (인별 통산)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하여 인별 원천징수세액 계산

거 래	계좌1(기본공제 적용)	계좌2	계좌3	합계
6월 누적소득금액 (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)	10,000,000	5,000,000	△9,000,000	6,000,000
잠정원천징수액*	(2,000,000)	(1,000,000)	-	(3,000,000)
인별 원천징수세액**	(800,000)	(400,000)	-	(1,200,000) (6백만원 × 20%)

\* (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) × 20%

\*\* 인별통산 후 소득금액(6백만원)에 대한 원천징수세액(1.2백만원)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(2:1)로 안분

③ (결손금 반영) 매 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공제\* 하며,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 통보

\* 결손금 소급적용(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) 불가

거 래	계좌1	계좌2	계좌3	합계
1~5월 결손금	△1,000,000	△1,000,000	△1,000,000	△3,000,000
6월 누적소득금액	10,000,000	5,000,000	△9,000,000	<del>6,000,000</del> → 3,000,000
잠정원천징수액*	(2,000,000)	(1,000,000)	-	
최종 원천징수세액**	<del>800,000</del> → (400,000)	<del>(400,000)</del> → (200,000)	-	<del>(1,200,000)</del> → (600,000)

\* (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) × 20%

\*\* 결손금 반영 소득금액(3백만원)에 대한 원천징수세액(0.6백만원)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(2:1)로 안분

②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: 반기(半期)별 예정신고

□ (예정신고)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

- (대상소득) ①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예: 취득가액 불분명 등)
- (신고기한) 반기 말일부터 2개월(8월말, 2월말)
- (예정신고 세율) 20% (3억원 초과분 25%)

③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환급

□ (확정신고)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

- (대상) 누진세율(25%)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,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,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 필요 자
- (방법)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\*를 통해 소득금액, 원천징수세액, 이월결손금 등 자료 제공 → 전자신고 및 납부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\* 전자신고시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금액, 원천징수세액, 추가 납부세액, 환급세액 등을 제공 → 납세자는 원클릭으로 신고 종결
- (환급) 확정신고시 제출한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

## 2

##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('22년 시행)

### ①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

-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 해소
  -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

#### <펀드 손실과세 개선>

구분	실제 투자손익	과세소득(현행)	과세소득(개선)
주식양도손실	△70	0	△70
채권양도이익	20	20	20
계	△50	20(과세)	△50(비과세)

### ② 적격 집합투자기구\* 소득구분 재분류 및 손익통산

\*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(3page)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

- (분배금) 집합투자기구의 **분배금**은 소득 원천에 따라 **배당소득**과 **금융투자소득**으로 구분
  - ① (이자·배당소득 등 **종합소득\***이 원천인 **분배금**) 매년 결산·분배 의무화 → **배당소득 과세**
    - \* 부동산임대소득 등 포함
    -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
  - ② (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**분배금**) 금융투자상품의 **양도·평가손익**은 **유보 허용** → 분배하는 경우 **금융투자소득 과세**
    - 유보된 소득은 추후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시 손익통산을 허용
- (**환매·양도소득**) 집합투자증권의 **환매·양도소득**은 **금융투자소득 과세**

- (손익통산)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·손실이 서로 상계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 가능

<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개선>

구분	현행		개선	
	집합투자기구 A	집합투자기구 B	집합투자기구 A	집합투자기구 B
환매이익	△80	100	△80	100
계	△80(손실 소멸)	100(배당소득 과세)	20(금융투자소득 과세)	

③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신고 의무 도입

-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증진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 도입

\* 미국, 영국, 일본,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

④ 비적격 집합투자기구\*에 대한 과세방법

\* 연 1회 이상 결산·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

- (집합투자기구) 법인세 과세

-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이자·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 과세

\* 집합투자자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,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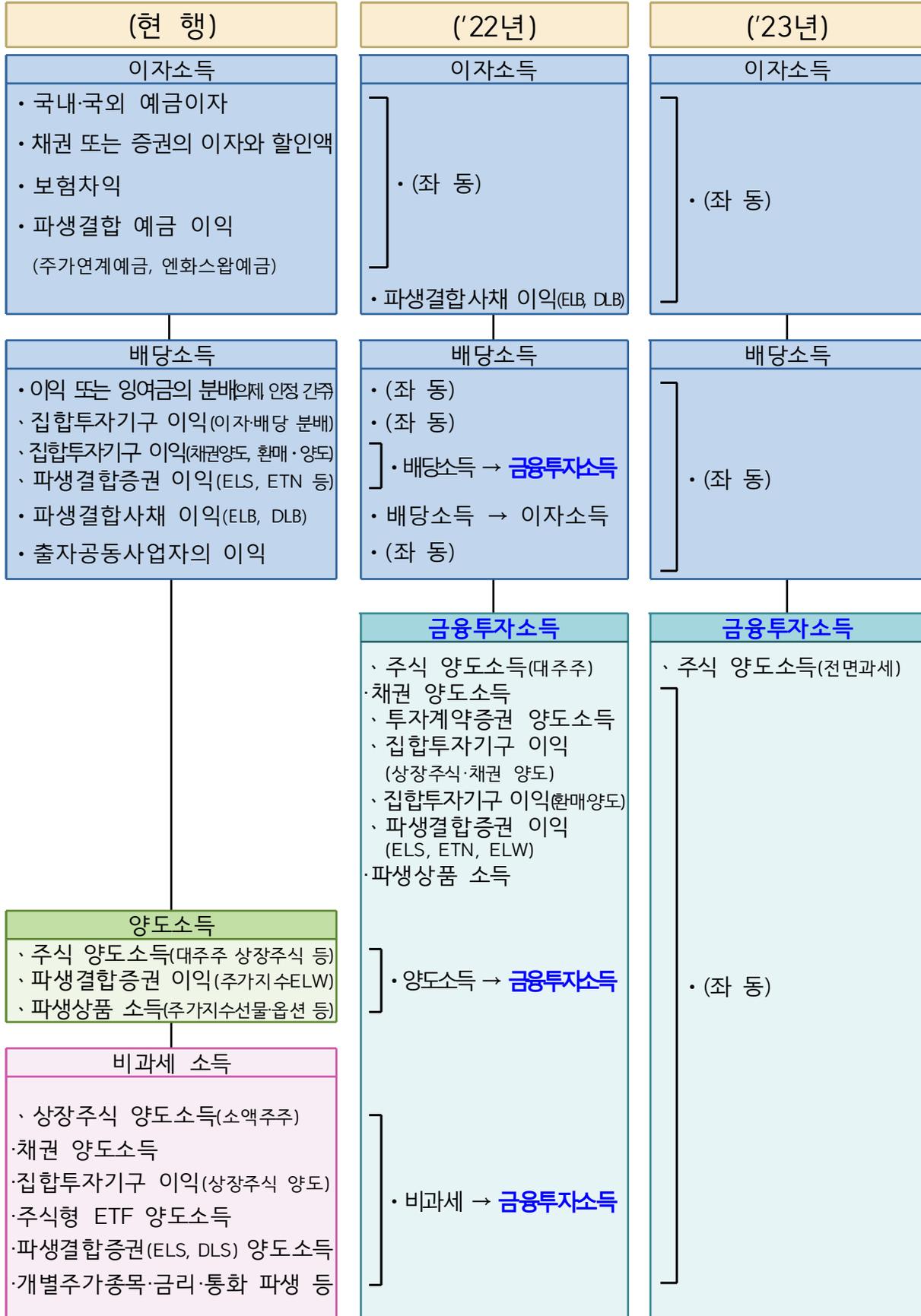
- (수익자)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 과세

\* 현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과세

- (국외집합투자기구)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

**참고1**

**금융소득의 구분**



## 3

## 증권거래세 조정 ('22년 ~ '23년 시행)

-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**세수중립적**으로 추진
  - ('22년)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\*, **증권거래세  $\Delta 0.02\%p$** 
    - \* 금융상품간 손익통산·이월공제,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(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)
  - ('23년)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\*, **증권거래세  $\Delta 0.08\%p$** 
    - \*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

**【증권거래세 0.1%p 인하시】:** (코스피) 증권거래세 0%, 농특세 0.15%  
(코스닥) 증권거래세 0.15%, (비상장) 증권거래세 0.35%

## 4

## 보완조치

## ①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

- (현행)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('23년) 전 **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**시키기 위한 **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**
- (개정) 현재 비과세인 **소액주주 상장주식**은 '23년 이후 양도시 **주식 취득**시기를 '22년 **말로 의제**(실제 취득가액,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)

## ②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

- (현행)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**특수관계인**으로부터 **증여받은 자산**을 수증자가 양도시 **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**으로 양도소득세 계산
  - \* 적용대상 : 토지·건물, 시설물이용권·회원권 등
- (개정) **증여공제**를 통한 **조세회피**를 방지하기 위해 **주식**에 대해서도 **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** (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)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- ('20년)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「2020년 세법개정안」(7월 말)에 반영
  - (7월 초) 공청회,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
  - (7월 말) 「2020년 세법개정안」 발표
  - (9월 초) 「소득세법」, 「증권거래세법」 등 관련 법률안 제출
    - (소득세법) 금융투자소득 도입,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
    - (증권거래세법) 증권거래세율 인하
- ('21년)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
  - (상반기)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
    -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전산시스템,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
  - (하반기) '20년 개정세법 중 보완 필요사항 입법

## 참고2

## 주요국 금융소득 과세방법

### ① (과세대상) 이자·배당소득 외에 자본이득에 대해 폭넓게 과세

- (미국·영국) 이자·배당 종합과세, 자본이득 분리과세
- (독일·프랑스·일본) 이원적 과세이론에 따라 이자·배당·자본이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분리과세

\* 일본 : (상장주식) 지분율 3% 이상 대주주의 배당·양도소득 종합과세  
(비상장주식) 모든 배당·양도소득 종합과세

\* 독일 : 지분율 1% 이상 대주주의 배당·양도소득 종합과세

### ② (과세방식) 세율, 손익통산,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

#### <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 사례 >

구 분	과세방식	손익통산	이월공제
미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자배당·단기 자본이득 : 종합과세</li> <li>■ 장기 자본이득 : 분리과세(0/15/20%)</li> <li>■ 기본공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·단기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통산 후 순·단기 손실·순·장기 손실은 각각 장기·단기 소득에서 공제</li> <li>■ 자본손실은 일반소득에서 연 3천달러 한도로 공제</li> <li>* 단기 자본손실 우선공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·단기 구분</li> <li>■ 이월기간 무제한</li> <li>■ 소급공제 불가</li> </ul>
영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자·배당 : 종합과세</li> <li>■ 자본이득 : 분리과세(10~20%)</li> <li>- 기본공제 : £12,000 (부동산 양도 포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본이득 내에서 포괄적으로 통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월기간 무제한</li> <li>■ 소급공제 불가</li> </ul>
독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자·배당·자본이득 : 합산 분리과세(26.375%)</li> <li>■ 기본공제 : €801*</li> <li>* 다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개산공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식 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</li> <li>■ 기타상품(채권·기타증권) 자본손실은 기타상품 자본이득 내에서 상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월기간 무제한</li> <li>- 100만 유로 초과 : 소득의 60% 한도</li> <li>■ 소급공제 1년 허용</li> <li>- 한도 : 100만 유로</li> </ul>
프 랑 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자·배당·자본이득 : 분리과세(30%)</li> <li>■ 기본공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본이득 내에서 포괄적으로 통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월기간 10년</li> <li>■ 소급공제 불가</li> </ul>
일 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자·배당·자본이득 : 합산 분리과세(20.315%)</li> <li>■ 기본공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장주식·주식형 펀드의 순손실은 상장주식·주식형 펀드의 배당·분배금·양도 소득에서 공제</li> <li>■ 비상장주식·파생상품은 각각 별도로 손익통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월기간 3년</li> <li>■ 소급공제 불가</li> </ul>

\* 자료: 조세재정연구원